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340
----------	-------

제안연월일 : 2015. 12. .

제안자 :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4년 12월 26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3년 4월 29일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5월 7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5.4.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6월 18일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2월 24일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6월 2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관련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하여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음.

나.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2015. 8.24.)는 회부된 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들을 통합·조정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5.12.14)는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회가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초과 모금한도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당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현으로 정하는 중앙당의 최고 집행기관에 대한 당내경선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선거경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장애인 추천 선거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보조금제도의 도입취지를 보다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그 배분기준을 조정하여 현행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과 함께 여성·장애인 추천비율도 반영하도록 하고,

그 밖에 이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체제로 개편된 10만원 초과 개인 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관련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규정으

로 변경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후원회 지정권자에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를 포함함(안 제6조제1항제5호).

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까지 초과 모금을 허용함(안 제12조제1항).

다. 현행 여성·장애인 추천 보조금 배분기준을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100분의 40, 직전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100분의 40, 여성·장애인 지역구 추천 후보자수의 100분의 20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변경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2항).

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추어 1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액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함(안 제59조제1항).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중 “당대표경선후보자가”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로 하고, “당대표경선후보자”를 각각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때에는 그러하지”를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

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당대표경선후보자가”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제26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을 추천한 정당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가목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항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각각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2호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각각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당대표경선후보자가”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당대표경선후보자를”을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을”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당대표경선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면세)”를 “(조세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를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면세영수증으로”를 “따른 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으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는 2014년에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 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u>중앙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라 한다)</u></p> <p>6. (생략)</p> <p>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 · ② (생략)</p> <p>③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 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u>당대표경선후보자</u>가 되는 경우 기존의 국회의원 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u>당대표경선후보자</u>의 후원회로 지정할</p>	<p>제6조(후원회지정권자)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u></p> <p>6. (현행과 같음)</p> <p>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당대표경선후보자</u> <u>등이</u>----- ----- -----<u>당대표</u> <u>경선후보자등</u>-----</p>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둔 대통령 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는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의 대표자는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와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생략)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

-----당대표경선후보자등

-----  
-----  
-----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당대표경선후보  
자등-----

-----  
-----  
-----  
-----  
-----

1. · 2. (생략)

③ ~ ⑥ (생략)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1. ~ 3. (생략)

4.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

5. (생략)

②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  
-----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 -----  
-----  
-----  
-----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1. ~ 3. (현행과 같음)

4. -----  
----당대표경선후보자등----  
-----  
-----  
-----

5. (현행과 같음)

② -----  
-----  
-----  
-----



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다만, 다른 정당·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

② ~ ⑤ (생략)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 .

② (생략)

③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가 경선의 종료로 그 신분이 상실되어 해산되는 경우

2. (생략)

④ (생략)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

-----  
-----.

-----  
-----

-----  
-----

-----당대표경선후보자등-----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 -----  
-----

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1.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 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나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로서 어느 하나의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해산되지 아니한 후원회에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

-----  
-----  
-----  
-----  
-----.

1. -----  
--

-----  
-----  
-----  
-----  
-----당대표경선후보  
-----자등후원회-----

-----  
-----  
-----  
-----  
-----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당대



표경선후보자·대통령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그 후원회와 후원회지정권자는 잔여재산을 제40조에 따른 회계보고 전까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① (생략)

②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표경선후보자등-----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2.·3. (생략)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① (생략)

②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2.·3.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도  
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  
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  
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장  
애인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  
을 각 선거의 장애인추천보조  
금 총액으로 한다.

1.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  
한 정당이 있는 경우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  
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  
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  
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2.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  
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  
구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

-----  
-----  
-----  
-----  
-----  
-----  
-----  
-----  
-----  
-----  
-----

1.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  
한 정당이 있는 경우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  
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  
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  
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  
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  
당이 추천한 지역구 장애인후  
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비  
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2. -----  
-----  
-----

가.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  
구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

00분의 5 미만을 추천한 정  
당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총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그  
금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  
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  
분·지급한다.

나.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

구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  
00분의 3 미만을 추천한 정  
당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총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되, 그  
금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  
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  
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  
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  
추천보조금은 가목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  
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

00분의 5 미만을 추천한 정  
당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  
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  
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

구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  
00분의 3 미만을 추천한 정  
당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  
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  
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  
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가  
목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  
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과할 수 없다.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5. · 6. (생략)

② 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두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 정당(정책연구소 및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4. -----당대  
표경선후보자등

5. · 6. (현행과 같음)

② -----  
-----  
-----  
-----  
-----당대표경선  
후보자등후원회-----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 -----



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 ⑦ (생략)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 경선후보자의 회계책임자,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

가. · 나. (생략)

② · ③ (생략)

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당대표  
경선후보자등-----

가. · 나.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회계보고) ① -----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  
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  
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  
표경선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정당의 경선일 후 20일 현재  
로 경선일 후 30일까지. 이 경  
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경선일 후 20일 현재로 경선  
일 후 30일까지, 경선일 후 21  
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  
음 연도 1월 31일까지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책임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당대  
표경선후보자등-----  
-----

-----  
-----.

-----  
-----  
-----  
-----  
-----  
-----

5.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 경선후보자가 후원회지정을 철회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경선의 종료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는 제외한다)

5.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후원회지정권자·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당대표 경선후보자,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 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호에 의한다)

가. · 나. (생략)

④ ~ ⑥ (생략)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직원

4. -----

-----당대

표 경 선후 보 자 등 이-----

5.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당대표 경 선후 보

자 등-----

가. · 나.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① -----

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 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하거나 관계 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은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

-----  
 -----  
 -----  
 -----  
 -----

-----당대표경선후  
보자등-----

-----  
 -----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당대표

경선후보자의 당내경선을 포함한다)의 선거기간 중 후보자(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⑥ ~ ⑧ (생략)

제56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① 정치자금범죄로 정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 후원회의 대표자 또는 그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검사는 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9조(면세) ①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경선후보자등-----

-----

-----당대표경

선후보자등을-----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6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① -----

-----

-----

-----

-----당대표경선후보자

등-----

-----

-----

-----.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조세의 감면) ① -----

-----

-----

-----

-----

-----

-----정

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



정에 의한 면세영수증으로 사  
용할 수 있다.

-----따른 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으로-----.